

# IT 융합대학원 원우회 회칙

## 제 1 장

제 1 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연구에 정진하며, 전문인으로써의 지역사회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 본회는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 학생회(이하“원우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 3 조(소재지) 본회는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내에 둔다.

제 4 조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
2. 연구발표 및 학술경연
3. 회원권익을 위한 대내외 학술활동
4. 간행물 발행
5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회원

제 5 조(구성 및 자격) 본회의 회원은 본 IT 융합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

제 6 조(권리와 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1.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
(단, 회비 미납자는 회원자격 상실)

### 제 3 장 임원

제 7 조(구성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회장 1인
2. 사무총장 1인
3. 위원 3인(재무, 기획, 학술)
4. 감사 1인
5. 고문 2인

제 8 조(임원의 자격 및 선임)

1. 회장은 원우회 회원 중 1학기 이상 남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 선거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.
2. 사무총장, 위원, 감사 및 고문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9 조(회장의 임기)

1.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, 1회 연임 가능하다.
2. 회장의 공석 시에는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보선으로서 총원할 수 있다.

제 10 조(임원의 직무)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업무 및 회의를 관장한다.
2.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회의, 행사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재무위원은 본회의 재무 관리업무, 교학팀 관련 업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, 원우회 조사 발생시 근조기 발송 조치를 주관한다.
4. 기획위원은 본회의 업무기획, 외부기관 상호 교류, 원우회 자체행사, 신입생 환영회 및 정기총회를 관장한다.
5. 학술위원은 본회의 학술에 관한 연구를 조성하고 타 대학원과의 교류 및 글로벌 IT 융합 세미나를 관장한다.

6.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.

7. 고문은 본 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제 11 조(고문)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둘 수 있다.

1. 고문(전대회장) 또는 원우회 전 위원

#### **제 4 장 선거관리 위원회**

제 12 조(선거공고일) 원우회장은 차기 원우회장 선거일 전에 선거일시, 선거장소 및 후보자 등록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후보자 등록) 원우회장 후보자는 선거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제 14 조(구성)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우회장이 된다.

제 15 조(선거결과) 원우회장 선거 및 당선인 확정은 임기 종료이전에 완료 한다.

#### **제 5 장 총회**

제 16 조(총회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2. 정기총회는 매년 2 회 개최하고 일주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원우 재적회원 2 분의 1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

제 17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칙의 개정
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3. 임원의 선임

4. 사업계획의 수립

5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 18 조(의결정족수)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## 제 6 장 임원회

제 19 조(구성) 원우회의 임원회는 회장, 사무총장, 위원(기획, 재무,학술),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.

제 20 조(자격) 임원은 1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회원을 원칙으로 하나,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신입 회원 중에 선임할 수 있다.

제 21 조(임원회 운영)

1.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3.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7 장 재정

제 22 조(수입 자원)

1. 본 회의 수입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① 원우회비
  - ② 특별회비
  - ③ 찬조회비
  - ④ 기타 자원
2. 원우회비는 10 만원을 기본회비로 하여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하며, 필요 시 임원회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3. 특별회비는 별도로 정하여 원내 및 원회원으로 징수한다.
4. 찬조회비는 회원 및 기타 모든 이로부터 회사 받을 수 있다.

제 23 조(재정관리)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에서 관리한다.

제 24 조(예산 및 집행) 예산은 학기 초까지 임원회에서 자체 사업비 및 제반 활동 경비에 대하여 사업별 항목별 심의 조정 후 IT 융합대학원의 자문을 얻어 임원회의에서 편성 및 집행한다.

제 25 조(결산보고) 본 회의 결산 보고는 년 2 회(학기말) 또는 원우회 임원회 변경 시 실시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.

제 26 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 월 1 일부터 익년 2 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, 학기별 임원회 변경시 개강 시점부터 입학식 및 졸업식 수행 월말까지로 한다.

제 27 조(경조비)

경조비 지급 기준내역

항 목		지 원	비 고
결혼	회원 본인	화환 또는 경조금	10 만원/인 상당
조의	회원 직계존속/비속	근조기	본인 부모/자녀 배우자 부모

단, 본인 결혼시 본인이 원할 경우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 명의의 화환 또는

경조금중 선택 가능함.

## 제 8 장 회칙개정

제 28 조(개정) 회칙의 개정은 제 16 조 2 항에 의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이를 행한다.

제 29 조(발의) 개정 발의는 임원단 회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하며 개정안 결정여부는 제 18 조에 따른다.

## 부칙

1. 본 회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은 2015년 5월 1일 개정하여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